C - 66 - 2016

- ② 자재 소운반 시에는 부재별 형상에 적합한 소운반 장비를 선정하고 사용하여야 하며, 인력운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.
- ③ 작업장 및 통로 주변 개구부의 안전난간, 덮개 등 방호시설 설치 여부와 통로의 바닥 상태 등을 확인하고,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④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관리, 유기용제 사용 및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보건 대책,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 요령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⑤ 말비계(간이작업대)사용 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떨어짐(추락) 위험이 있는 개구부 주변에서 사용 금지
-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고, 전도 예방조치 실시.







<그림 12> 말비계

⑥ 타정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3> 런너(Runner) 고정용 타정총

- ⑦ 타정총(화약총)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☞ 타정총 등 화약을 사용하는 공구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 하여야 한다.
- 따 타정총 사용 시에는 사람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, 이동시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.